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지난 8월 1일에 "기계외재료" 취재팀은 중소기업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홍보실을 찾았다.

질문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목적과 연혁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중소기업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9년 1월 30일에 설립되었다. 그해 9월에 프랑크푸르트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하였고, '80년 7월에는 농가공산품 개발업무를 시작하였다. '81년에는 동경사무소를 개설하고, '82년에는 중소기업연수원을 개원하여 중소기업의 생산기술 진흥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83년에는 미국 시카고 해외사무소를 개설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정보를 취합하여 국내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하고 있다. 그후로, 조직을 계속 확대 개편하여 각 시도별 지부를 개설하여 중소기업의 진흥에 힘쓰고 있다.

질문 :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속에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귀 공단의 주요 지원 사업은?

답변 : 국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크게 시설근대화 및 공정 개선, 창업 지원, 기업간의 협동화, 사업전환 및 유희설비 해외이전, 기술개발 및 타업종과의 교류지원, 정보화 그리고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으로 이양 등의 업무로 나눌수 있습니다.

1. 시설근대화 및 공정개선 지원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생산자동화, 공정개선, 노후시설의 개체, 신규시설의 구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자산총액이 1억원 이상, 종업원수 21인 이상, 1년 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전업을 50% 이상의 업체로서, 수도권, 부산 및 대구직할시 소재업체는 우선육성업종(표 1참조)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와 기계류 부품 및 소재 국산화 개발

대상품목(상공부 고시) 영위업체 그리고 화학, 1차금속,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업종 영위업체 등이다. 아울러 지방 소재업체는 전업종 영위업체가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내용은 시설자금을 연 9%로 2억원까지 8년간 대출한다. 그리고 경영·기술지도·정보제공 등도 연계 지원하며,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2. 창업지원

신기술 또는 신개발제품의 기업화를 촉진하고

표 1) 중소기업 우선육성업종(제조업)

산업분류	업종명	산업분류	업종명	산업분류	업종명
32113	모방직업	35224	의약제 제품 제조업	37191	단조업
32125	세복직물 제조업	35229	기타 의약품 제조업	37192	표면처리강 제조업
32129	기타 직조업	35233	계면활성제제조업	37241	비철금속 주조업
32131	섬유 및 사 염색가공업	35291	접착제 및 재라틴 제조업	37242	비철금속 단조업
3213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가공업	35295	광택제 및 특수세척제 제조업	38113	수공구 제조업, 농업용은 제외
32133	나염 가공업	35299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38117	일반철물 제조업
32139	기타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	35592	산업용 고무제품 제조업	38132	건축용 장식 금속공작물 제조업
32143	캔버스제품 제조업	35601	제1차 프라스틱 제조업	38134	보일러 및 관련제품 제조업
32153	의외 편조업	35602	프라스틱·발포성형제품 제조업	38135	금속구조체 제조업
32192	펠트 및 부직포 제조업	35603	강화프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38141	분말아염비늘 제조업
32226	가죽 및 모피의복 제조업	35604	산업용 프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38143	금속열처리업
32311	원피가공업	35609	기타 프라스틱제품 제조업	38144	도금업
32331	산업용 가죽제품 제조업	36104	전기·전자용 도기제품 제조업	38149	기타 열처리 표면처리업
32332	가방 제조업	36105	이화학 및 산업용 도기제품 제조업	38191	금속포장용기 제조업
32333	핸드백 제조업	36203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38192	금속가정용품 제조업(조립제품만 해당, 압연제품은 38142로)
32334	가죽케이스 제조업	36204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38193	금속제 위생용품 제조업
32404	신발재단물 및 부속품 제조업	36205	광학유리 제조업	38194	난방용구 제조업
34121	골판지상자 제조업	36206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38195	나사제품 제조업
34221	일반인쇄업(임가공)	36207	유리섬유 및 유리섬유제품 제조업	38196	철선제품
34229	기타 상업인쇄업(임가공)	36949	기타 내화물 제조업	38198	발브 및 파이프 가공품 제조업
35122	가성소다 및 관련 제조업	36992	암면 및 철연제품 제조업	38220	농업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5123	산업용가스 제조업	36993	연마제 제조업	38231	금속절삭기계 제조업
35131	염료 제조업	37131	주철강관 제조업	38232	금속성형기계 제조업
35132	안료 및 착색제 제조업	37132	선철(회)주물 제조업	38235	목공기계 제조업
35160	농약 제조업	37133	강주물 제조업	38236	회환용 절삭구 제조업
35222	의료화학물 및 생약제 제조업	37134	가단주철주물 제조업	38237	금형 및 관련제품 제조업
35223	항생 의약품질 제조업	37139	기타 주조업		

산업분류	업종명	산업분류	업종명	산업분류	업종명
38239	기타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제조업	38334	가정용 전열기구 제조업	38523	사진기 제조업
38242	섬유용 기계 제조업	38335	전기 이·미용기구 제조업	38527	현미경 및 망원경 제조업
38243	식료품 가공기계 제조업	38339	기타 가정용 전기구 제조업	38528	안경제조업
38245	고무 및 플라스틱 산업용 기계 제조업	38342	반도체 및 관련장치 제조업	38532	전기·전자시계 제조업
38247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38343	전자기기용 축전기 제조업	38542	도안 및 제도기구 제조업
38251	자동 자료처리장비 제조업	38344	전자기기용 저항기 제조업	38543	물질검사 및 시험기구 제조업
38256	컴퓨터 프로그램매체 제조업	38345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유도자 제조업	38544	이화학용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38291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38349	기타 전자관 및 전자부품 제조업	38545	가스 및 액체용 적산계기 제조업
38292	송풍기 및 환풍기 제조업	38391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8546	회전속도계 및 계산장치 제조업
38293	물품취급장비 제조업(산업용 트럭 제외)	38392	전구 제조업	38547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38295	재봉기 제조업	38393	축전기 제조업	38548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38296	산업용 로봇 제조업	38395	전기조명장치 제조업	38549	기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38297	기계식 동력전달장치 제조업(베어링 포함)	38396	전기배선기구 및 연결장치 제조업	39010	귀금속의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38311	발전기, 전동기 및 기타 회전전기 기계 제조업	38399	기타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39039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38312	변압기 제조업	38411	선박용기관 및 부품제품 제조업	39041	인형 제조업
38313	개폐장치 및 보호장비 제조업	38412	강선건조 및 수선업	39042	승용장난감 제조업
38314	산업용 전기 제어장비 제조업	38423	철도차량 부품 제조업	39043	장난감 제조업(인형 및 승용물 제외)
38315	전기용접기 제조업	38432	자동차 부품 제조업	39049	기타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8316	내연기관용 전장품 제조업	38441	자전거 제조업	39091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8319	기타 전기산업용 기계 및 장치 제조업	38511	의료용가구 제조업	39092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38321	음향 및 영상기기 제조업	38512	의료처치 및 진단기구 제조업	39095	파스너(지퍼) 제조업
38322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38513	기계요법 및 관련기구 제조업	39096	단추제조업
38323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38514	치과 전용장비 및 용품 제조업		
38324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38515	정형의과용품 제조업		
38325	방사선 장치 및 전기의료 장치 제조업	38519	기타 의료용기구 및 용품 제조업		
38326	음반 및 녹음테이프 제조업	38522	광학요소 제조업		

창의력 있는 기업가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업설립일로 부터 1년 이내인 자와 신규 창업자로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을 기업화하는 출와 기술개발촉진과 부품 및 소재의 수입대체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출(상공부 고시) 그리고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출가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시설자금을 3억원까지 연9%로 8년간 대출하며, 운전자금은 1억원을 연9%로 3년간 대출한다.

세제혜택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창업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년도부터 3년간 100% 면제, 그후

2년간 50% 감면한다. 단 수도권 지역은 3년간 50% 감면, 그후, 2년간 30%감면해 준다. 또, 등록세와 취득세는 창업후 2년내 취득 재산의 50%를 감면해 주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감면해 준다.

### 3. 기업간의 협동화 지원

동종 또는 관련업종을 영위하는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장의 집단화, 시설의 공동 이용 및 사업의 공동화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참가자격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가동중에 있는



사진 1) 주안 아파트형 공장조감도

업체와 최근 결산연도 부채비율이 800% 미만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시설자금, 공동 공해방지 시설자금, 아파트형 공장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소요금액의 60~90%정도를 지원한다.

또한 세제혜택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내에 등기하면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최근 과세년도분은 면제하고, 그후 3년간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4. 사업전환 및 유휴설비 해외이전

중소기업이 최근의 경영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기술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경우 이를 지원하며, 이에 따른 유휴설비의 해외이전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전환이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세분류(4단위)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70%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원화절상과 임금상승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거나, 약화가 예상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년이상 공장을 가동중이고, 자산총액이 1억원이상, 종업원 5인 이상으로 대상업종의 최근 결산연도 轉業率이 매출액 기준으로 50%이상인 업체이다.

지원내용은 시설자금을 3억원 한도내에서 연8%로 8년간 대출해 준다. 아울러 세제지원으로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기존업종을 완전폐지후 업종전환시는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면제하고, 그후 2년간은 50% 감면한다. 기존업종을 축소후 업종전환시는 소득세·법인세 등을 3년간 50% 감면하고, 그후 2년간은 30% 감면한다.

유휴설비 해외이전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업체는 사업전환 대상업체,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업체 및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업체가 양도하는 설비를 구입하여 해외이전 하고자 하는 업체이다.

시설자금으로 3억원을 연7%의 이율로 8년간 대출, 운전자금으로 1억원을 연7%의 이자로 3년간

표 2) 협동화사업의 유형

구 분	내 용
공장집단화	동종 또는 관련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단지를 조성, 공장을 건립하고, 입주하는 사업
시설공동화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고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영위하는 사업
경영협업화	중소기업들이 공동구관사업을 전개하거나, 공동기술개발, 공동상표제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
기업합병	동종 또는 관련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이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코자 기업을 합병하여 협동화를 촉진하는 사업
아파트형공장	도시형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의 공장용지 구득난을 해결하고 시설근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층형 공장을 건설 또는 매입하여 입주하는 사업

표 3) 연구개발 지원대상이 되는 기술 유형

개발 대상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제품의 설계 및 제조에 관한 기술</li> <li>○ 신재료 또는 신소재의 제조 및 이용에 관한 기술</li> <li>○ 기계, 부품 또는 장치의 省力化, 자동화, 고성능화에 관한 기술</li> <li>○ 생산, 가공 또는 처리를 위한 설계 및 공법에 관한 기술</li> <li>○ 소프트웨어개발기술</li> </ul>
우선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형, 열처리, 주·단조, 도금, 염색가공, 용접, 계량기술 등 산업기반기술</li> <li>○ 상공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기계류·부품 및 소재개발 대상으로 고시한 품목 (단, 공업발전기금에서 기 지원된 품목은 제외)</li> <li>○ 상공부장관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공고한 기술개발과제(단, 공업발전기금에서 기 지원된 과제는 제외)</li> <li>○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 과제</li> <li>○ 정보화사업을 위한 소프트웨어개발기술</li> <li>○ 기타 상공부장관이 기술개발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li> </ul>

대출 받을수 있다. 아울러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 5. 기술개발 및 타업종간 교류지원

중소기업이 국산화 촉진,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국제수지 개선 등에 기여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개발대상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그 성과를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기타 상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조합으로서, 연구개발분야는 신청일 현재 12개월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거나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액이 1억원 이상인 者 그리고 상시 종업원수가 5인 이상인 者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사업화 분야는 신청일 현재 24개월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거나,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액이 2억원 이상인 者 그리고 상시 종업원수가 5인 이상인 者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사업화 지원대상은 ①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공업발전기금, 산업기술향상자금, 국민투자기금 등을 지원받아 연구개발이 완료된 품목을 사업화하고자 할때, ②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대학·정부출연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개발하여 개발이 완료된 품목을 사업화 할때, ③중소기업이 소유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사업화, ④외국과의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개발한·품목의 사업화, ⑤특정연구개발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품목의 사업화, ⑥앞에 열거한 지원대상 이외의 품목으로 상공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처 장관이 고시한 기계류·부품 및 소재개발 대상품목으로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품목의 사업화, ⑦기타 상공부장관이 기술개발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할 때 지원한다.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연구용·새제품 제작용 기계장치 및 기자재 구입비를 시설자금으로 지원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 시험검사비, 연구인력 인건비, 기술도입비 등을 운전자금으로 지원한다.

사업화를 위해서는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기계장치, 시험검사 시설, 공해방지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자금으로 지원하고,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소요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정부등 공공기관, 민간단체 또는 기업 등에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신용보증

표 4) 기술개발 지원 부문별 취급기관

부 문 별	취급기관 (담당부서)	전 화 번 호
1. 연구개발지원		
○ 지도사업과 연계지원 (기계·전자시제품 개발, 섬유신소재개발 등 포함)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개발부)	783-9611
○ 기타 시제품	생산기술연구원(기술관리본부)	563-6891
○ 공정기술 및 공통취약 기술개발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개발부)	783-9611
2. 사업화지원		

특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타업종간 교류지원은 업종이 다른 여러기업이 각 社가 보유하고 있는 경영정보, 전문기술, 판매력등 경영·기술 자원을 교류함으로써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는 경영·기술자원의 상호 보완 활동입니다.

교류그룹에 대한 지원내용은 특허, 세무, 기술개발 등 각 전문분야의 세미나 개최와 교류그룹에 대한 지도·연수 실시 그리고 교류그룹의 기술개발, 신상품 개발 등 타업종 교류관련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6. 정보화 사업

중소기업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장의 자동화, 경영관리의 전산화, 유통관리의 자동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산망 구성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원가절감, 품질향상, 경영·기술정보의 활용을 통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이다.

개별정보화 사업 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컴퓨터 시스템과 이와 연결되는 주변기기 및 기계장치 구입비, 소프트웨어 개발·구입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정보화 시범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개발·구입비, 기술인력 인건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교육훈련 지도비, 시운전검사 및 최초 6개월간의 유지보수비, 홍보비 및 기타비용을 지

표 5) 중소기업정보화 전문인력양성기관 현황

기 관 명	소재지	전 화 번 호	담 당 부 서
한 남 대 학 교	대 전	(042) 629-7757	전 자 계 산 교 육 원
원 광 대 학 교	전 북	(0653) 50-5563	정 보 처 리 연 구 원
서 강 대 학 교	서 울	704-9230	경 영 회 계 연 수 원
( 재 ) 정 보 문 화 센 터	서 울	791-1059	위 탁 운 영 과
시 스템 공 학 연 구 소	서 울	560-5220	교 육 실
한 국 생 산 성 본 부	서 울	739-5868	사 무 자 동 화 교 육 실
한 국 컴 퓨 터 기 술 원	서 울	558-2526	관 리 과
( 주 ) 케 이 티 브 이	서 울	865-8926	정 보 화 교 육 센 터
태 양 금 속 공 업 ( 주 )	서 울	472-9891/2	교 육 센 터
동 아 대 학 교	부 산	(051) 204-0171	경 영 정 보 교 육 원
계 명 대 학 교	대 구	(053) 620-2200/2	전 자 계 산 소
조 선 대 학 교	광 주	(062) 232-8151	전 자 계 산 소
한 국 기 계 연 구 소	창 원	(0551) 80-3185	전 산 실

원한다.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대역하고, 범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개발용·시제품제작용 기계장치 및 기자재 구입비, 하드웨어 이용료와 기타 비용도 지원한다.

정보화 인력양성 기관의 시설확충에 따른 정보화 관련 시설(건축비 포함), 교육기자재 및 교재개발비, 교육요원 인건비·교육재료비 그리고 기타 경비도 지원한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사업추진에 직접 필요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과 이와 연결되는 주변기기 및 기계장치구입비, 소프트웨어 개발·구입비,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자료수집비와 기타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 7.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대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중소기업이 이양받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기업으로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 32~39에 해당하는 업종 및 동 생산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양받는 경우로서 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날이 지원신청일 현재 1년 이내인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3억원 한도의 시설자금을 연9%의 이율로 8년간 대출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사업을 인수받은 중소기업체에게 경영·기술지도 및 연수교육을 지원해 준다.

**질문 :**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에 튼튼히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업낙후 지역에 조성된 농공지구에 입주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중소기업과 규모가 영세하고 지역특성과 전통미를 살린 공예품을 개발하는 소기업을 지원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 크게 농어촌 공업 육성사업과 소기업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새로운 공예품의 개발 및 상품화를 유도하고, 우수 공예품의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공예품 경진대회를 매년 개



사진 2) 국일프레스의 가공라인

최하고 있으며 우수 개발품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1. 농어촌 공업육성 지원사업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농·어촌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지정한 논공단지 에 입주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대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입주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와 창업, 이전·분공장, 협동화 사업 등을 희망하는 업체로서 업종 및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내용으로 일반지역에서는 2억원을 시설자금으로 연8% 10년간 대출하고, 그리고 운전자금으로 1억원을 연8% 3년간 대출해 준다. 추가지원 지역에서는 3억원을 시설자금으로 연 7.5%의이율

표 6) 농어촌 지원자금 우선지원대상 및 추가지원대상 지역

도 별	일반지원농어촌 (3시 28군)	추가지원농어촌 (15시 42군)	우선지원농어촌 (1시 49군)
강 원 도	원주군, 춘성군, 횡성군, 홍천군(4)	속초시, 삼척시, 영월군, 철원군, 명주군(5)	태백시,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삼척군(9)
충청북도	진천군, 청원군, 음성군, 괴산군, 영동군, 증원군(6)	옥천군, 제원군(2)	보은군, 단양군(2)
충청남도	온양시, 공주시, 연기군, 공주군, 금산군, 천원군, 아산군, 논산군(8)	대천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서산군, 당진군, 태안군(8)	부여군, 보령군, 청양군(3)
전라북도	-	정주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김제군, 익산군, 옥구군, 임실군(8)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남원군, 순창군, 정읍군, 고창군, 부안군(8)
전라남도	광양군, 여천군(2)	나주시, 승주군, 장성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완도군, 화순군, 나주군, 담양군(10)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진도군, 신안군(10)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군, 달성군, 경산군, 칠곡군, 선산군(6)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점촌시, 안동군, 영일군, 군위군, 경주군, 성주군, 금릉군, 상주군, 문경군, 영풍군, 고령군(14)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9)
경상남도	의창군, 양산군, 김해군 울주군, 거제군(5)	삼천포시, 충무시, 밀양시, 창녕군, 밀양군, 사천군, 진양군, 하동군, 통영군, 함안군(10)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7)
제 주 도	-	-	남제주군, 북제주군(2)
합 계	31	57	50

로 10년간 대출하며, 2억원을 운전자금으로 연7.5% 3년간 대출한다. 우선지원 지역에서는 5억원을 시설자금으로 10년간 연7%로 대출하며, 3억원을 연7%로 3년간 대출한다.

## 2. 소기업 지원

소기업지원 사업은 자력 성장기반이 취약한 소기업의 공정개선, 생산자동화, 품질향상 및 신제품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자산총액이 5천만원 이상, 종업원 4인 초과 20인 이하, 1년 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전업을 50%이상의 업체로서 공업기반기술 영위업체, 기계·부품 및 소재 국산화 개발 대상품목 영위업체 그리고 공예품 전문 생산지정업체 및 공예품경진대회 입상 업체등에 1억원을 8년간 연8%의 이율로 대출한다.

**질문 : 중소기업이 경영혁신과 기술개발력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속에서 국제경쟁력을 배**



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영·기술상의 애로사항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생산현장에 직접 방문해 문제점을 해결해 줌으로써 경영 개선 및 기술향상을 촉진하고자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인의 경영능력 향상과 종업원의 실무응용능력을 배양하고자 경영·기술 분야의 연수사업도 합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에 신속히 대처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수 있도록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의 발간·배포, 개별 정보 제공, 자료실 등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이 발간하고 있는 자료는 중소기업에 유용한 경영정보, 시책 및 동향을 수록한 “중소기업 진흥”과 국내외 각종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종합기술 정보,” 생산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현장기술”과 중소기업에 관한 각종 경제지표 및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 : 끝으로, 우리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국가간

교역이 확대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국제화도 나날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이 선진국으로 부터 기술을 도입 하거나, 외국기업과 합작을 추진할 경우, 귀공단 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줄수 있습니까?

답변 : 그런 지원사업을 우리는 국제협력사업이라고 합니다. 국제협력은 선진기술 도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소재·부품의 수입대체 및 품질고급화를 도모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축적된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對한국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과, 합작 및 기술도입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위해 선진 기술 對韓 이전 알선, 선진국 기업의 對韓 합작투자 유치, 적정 파트너의 발굴·소개, 협상 및 계약체결 중재, 협력절차 상담 및 정보 제공, 투자사절단 파견 및 유치 등 국제협력 전반에 걸쳐 지원한다.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기술 이전 및 해외투자를 위한 해외투자 허가 및 자금지원 절차 상담, 투자 현지국의 투자환경 상담 등등을 다양 하게 지원하고 있다.

감사합니다!